

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

제정 : 2011.07.01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2.07.22
개정 : 2014.07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대원대학교 부설 “사회봉사센터” 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 라 한다.
<개정 2011. 11. 22.>

제2조(소재) 센터는 대원대학교 내에 둔다.<개정 2011. 11. 22., 2021.12.01>

제3조(목적) 센터는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
교의 건학이념과 진리·창의·봉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책
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데 있다.
<개정 2021.12.01.>

제4조(사업)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<개정 2021.12.01.>

1. 사회봉사활동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와 사회전역에 대한 봉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봉사활동 지도·교육 및 평가관리
5. 봉사활동의 홍보·출판사업
6. 기타 대학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② 센터장은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
<개정 2012. 07. 22., 2021.12.01>

제6조(사무직원) ① 센터에는 센터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② 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제7조(자치기구) ① 센터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입학학생취업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 07. 01., 2020. 03. 01., 2021.12.01., 2022.10.01. 2023.10.16.>
- ③ 직원 1인을 간사로 보하여 행정 지원토록 한다.

제10조(임기)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1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지역사회와 대학사회봉사 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5. 교직원·학생·봉사활동의 지원사항
6. 기타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4장 재 정

제12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와 외부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총당한다.
<개정 2021.12.01.>

제13조(회계년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4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